

의안번호	2214407
의 퇴 인	김선교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3.
추계번호	25B6380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의3(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,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, 반려동물용의약품, 반려동물용품,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72조의3(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,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등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(안 제72조의3)

-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, 반려동물용의약품, 반려동물용품, 반려동물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반려동물 연관산업¹⁾의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대상·내용·범위 등에

1) 안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4. “반려동물 연관산업”이란 반려동물사료, 반려동물의약품, 반려동물용품을 제조·수입·유통·판매하거나 반려동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.

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의 반려동물 산업 관련 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이 있음

[표 1] 반려동물 산업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'25예산
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(R&D) (2280-426)	반려동물의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거리, 의약품 등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지원	4,501
반려동물전주기고도화기술개발 (R&D) (1147-307)	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반려동물 영양생리 기반의 사료화 및 건강·질병예방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	4,010
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 수출산업화 (3471-347)	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 등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지원	1,590
	[One-welfare Valley 조성]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실증, R&D 등이 집적화된 종합인프라를 조성하여 기술 산업화 활성화 등 지원	1,130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중 발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@assembly.go.kr